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7. 9. 5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박미영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런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 사용 (안 제7조)

○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운영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혼인·임신·출산·육 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,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 망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

-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.
-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,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,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인턴취업지원 사업,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 성1)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190만 6천명이며, 이 중 서울시는 35만 1천명으 로 전체의 18.4%를 차지하고 있음.
-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 위하면 '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'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²⁾ 등 경력단절 여성의

¹⁾ 통계청 「2016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」

⁻ 만 15~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

²⁾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. 「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연구」

재취업 욕구는 매우 높은 편임.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, 개인의 인적특성,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,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며,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(박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3

발의년월일: 2017년 8월 29일

발 의 자 : 박미영 의원 외 5명

1. 제안이유
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우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다.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 사용(안 제7조)
- 라.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운영(안 제8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근거 :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7. 7. 27. ~ 8. 4.) 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경력단절여성등"이란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
- 2. "경제활동 촉진"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교육기관·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- 3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여성고용업종" 이란 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용자의 책무)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시행계획 등) ① 구청장은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 - 1.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 - 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
 - 3.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
 - 4.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
 - 5.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업
 - 6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
 - 7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

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